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1-13호
2021. 2. 10.(수)

차 례

조 례 (6)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94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조례 제1495호) 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96호) 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조례 제1497호) 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498호) · 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99호) 33

고 시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12호) 36

공 고 (3)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159호) 37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160호) 39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161호) 49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162호) 51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1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9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
터 적용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제3조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월	2,148,000 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1년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 만큼 상향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별표 2).

- 당초 2,106,800원 ⇒ 변경 2,148,000원 / 41,200원(1.96%) 인상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 * 70% = 1.9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1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9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대덕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4.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 나.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제4조).
-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 마. 1인 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바. 1인 가구 지원 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및 제9조).
-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1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9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휴일”을 “토요일,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무원의 연가가”를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으로,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
도록”을 “아니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
가는 14시를 기준으로하여”를 “연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가

원의 제출이 있을”을 “연가신청을 받았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4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2항 중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인사교류 시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한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의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119호, 2020. 10. 20.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 조례와 중복·상충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확대함(제23조제1항 별표 3).
 - 경조사특별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 : 1일 → 3일
- 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 축소함(제23조제12항).
 - 퇴직준비휴가 일수 : 3개월 → 1개월
-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상충된 근무기강확립, 휴가의 종류, 연가의 분할 허가 및 연가보상비 지급,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병가, 특별휴가 일부, 휴가기간의 초과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제4조, 제17조, 제19조제2항 및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3항,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25조, 별표 2).
- 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사항을 신설함(제19조의2).
- 마. 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1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9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 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덕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비용)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사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다.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라.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마. 교육교재, 실시방법, 강사,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바. 교육통지, 이수자 관리 및 불참자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사.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1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9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덕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제3호에 따른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기관”과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품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발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및 경제정책과장, 관련 업무 부서장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유통지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이며,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⑤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은 권면금액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유효기간

3.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재고, 환전 현황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실적을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대덕구(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구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있다.

3.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8조에 의한 유통지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5. 그 밖에 유흥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이나 업체

③ 구청장은 가맹점의 자격 요건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가맹점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이 된 경우
2.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상품권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포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구매한도를 월 70만원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월 100만원 이내로 확대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상권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상품권과 연계하여 이벤트, 행사 추진

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⑤ 구청장은 상품권 홍보를 위하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품권과 관련된 사용자 이벤트

2.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투표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⑥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인센티브 외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상품권의 발행·운영에 따른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따른 비용
5. 상품권의 판매를 위한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업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유통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유통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유통질서 확립)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포상) 구청장은 상품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사업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덕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상품권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라. 판매대행점 협약, 가맹점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 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한도, 구매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4조).
- 사.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및 제17조).
- 아. 상품권 활성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1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9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매년”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계획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무위원회를”을 “실행단을”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실행단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을 “실행단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실행단은 실행단장”으로,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을 “20명 이내의 실행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실무위원회”

를 “실행단”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무위원회의”를 “실행단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덕구형 동네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덕구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네 돌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동네 돌봄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계획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 및 동네 돌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나. 실행단 구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제19조).

- 실무위원회 명칭을 실행단으로 변경함.
- 실행단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함.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대화동 1-19	대화로32번길 60-30	2021. 2. 10.	건물신축	대화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봉동 206-1	대덕대로1601번길 62	2021. 2. 10.	건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6,0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구 아리랑로 55번길	교통정보 CC TV 설치	신대동 535번지	-	비포장 도로	2.6	'21.03. ~ '21.05.	6.76 ('21.03. ~ '21.05.)	6.76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덕구 신대동 535번지 일원
------	------------------

위 치 도



굴착위치	대덕구 신대동 535번지 일원
------	------------------

사 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장동로	상수관 매설	와동 산38-1번지	200.00	아스콘	2.0	착공일로부터 60일	2.0 (착공일로부터 60일)	0.06
2	대덕구 문평서로 17번길	상수관 매설	문평동 42-7번지	200.00	아스콘	2.0	착공일로부터 60일	2.0 (착공일로부터 60일)	0.14
3	대덕구 중리로 43번길	상수관 매설	중리동 383-10번지	200.00	아스콘	2.0	착공일로부터 60일	2.0 (착공일로부터 60일)	0.01
4	대덕구 신일서로 126번길	상수관 매설	신일동 1691번지	200.00	소형고압블록	2.0	착공일로부터 60일	2.0 (착공일로부터 60일)	0.14
5	대덕구 비래동로 7번길	상수관 매설	비래동 123-33번지	200.00	아스콘	2.0	착공일로부터 60일	2.0 (착공일로부터 60일)	0.04
6	대덕구 석봉로 7번길	상수관 매설	석봉동 305-41번지	200.00	아스콘	2.0	착공일로부터 60일	2.0 (착공일로부터 60일)	0.01
7	대덕구 장동로 278번안길	상수관 매설	장동 185번지	200.00	아스콘	2.0	착공일로부터 60일	2.0 (착공일로부터 60일)	0.02
8	대덕구 신탄진로 790번길	상수관 매설	신탄진동 136-17번지	200.00	아스콘	2.0	착공일로부터 60일	2.0 (착공일로부터 60일)	0.02
9	대덕구 신탄진로 839번길	상수관 매설	신탄진동 114-6번지	200.00	아스콘	2.0	착공일로부터 60일	2.0 (착공일로부터 60일)	0.02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산38-1
사 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2-7
<p>위 치 도</p>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2-7
------	--------------------

<p>사 진</p>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83-10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83-10

사 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1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1

사 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23-33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23-33

사 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05-41

위 치 도



굴착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0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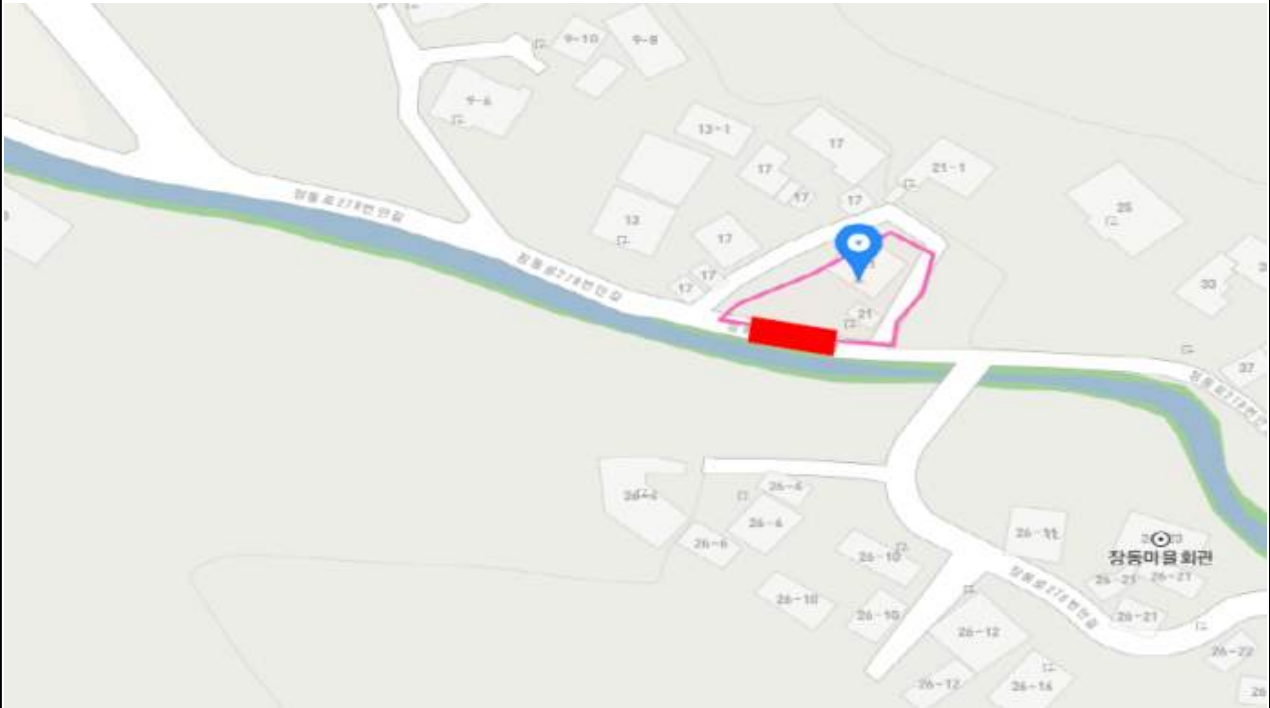
사 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185

위 치 도



굴착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185

사 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36-17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36-17

사 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14-6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14-6

사 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물 규모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대청로	상수도 맨홀 PC박스 설치	미호동 433번지	1,900 × 1,900 × 1,900	아스콘	6.0	착공일로부터 120일	12.00 (착공일로부터 120일)	3.61
					콘크리트				
					투수아스콘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433

위 치 도



굴착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433

사 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건설산업(주)에서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구 상서당1길	공장 진입 및 우·오수관 매설	상서동 331-1번지	600.00	아스콘	10.0	착공일로부터 30일	62.80 (착공일로부터 30일)	10.00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31-1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31-1

사 진

